

◇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지방세 감면 여부 결정과 관련하여 신청인이 그 통지 방법을 사전에 선택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신청서 등 관련 서식에 감면 결정 통지 방법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<행정안전부 제공>

○고용노동부령제272호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중정정)

관보 제19656호(2019.12.26.)에 게재된 “고용노동부령제272호(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)” 중 오류 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고용노동부장관

관 보 내 용	정 정 사 항	비 고
4. 안전보건규칙 제574조 각 호에 따른 방사전 업무를 하는 장소	제574조제1항 각 호	관보 제19656호 제42쪽 9행
③ 영 제97조제2항에 따른 “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건강검진기관”이란 「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」 제4조제2항에 따른 일반검진기관으로서 해당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을 말한다.	제4조제1항제1호	관보 제19656호 제110쪽 14행
제239조(과징금의 납부통지 등) ① 영 제111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·징수절차에 관하여는 「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」을 준용한다.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신청방법 및 이의신청기간을 함께 기재해야 한다.	영 제112조제1항	관보 제19656호 117쪽 17열, 20열
② 영 제111조제6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는 별지 제100호서식에 따른다.	영 제112조제6항	

고

시

●금융위원회고시제2020-2호

「보험업감독규정」 제6-11조의3, 제6-18조의4에 의한 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20년 1월 17일

금융위원회 위원장

재무건전성준비금 적립기준